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정	1993. 4. 9.	노동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6.12.16.	노동부훈령	제440호
개정	1998. 7.20.	노동부훈령	제475호
개정	2001. 5.12.	노동부훈령	제531호
개정	2003. 7. 4.	노동부훈령	제560호
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개정	2006.12.20.	노동부훈령	제634호
개정	2008. 6. 9.	노동부훈령	제666호
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개정	2009. 7.31.	노동부훈령	제703호
개정	2011. 5. 9.	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개정	2012. 2. 8.	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개정	2014.10.27.	고용노동부훈령	제131호
개정	2015. 6. 3.	고용노동부훈령	제1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1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산재예방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관서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감독관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
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
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
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제6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보고요구)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 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8조(출석요구) 및 제9조(보고요구)를 준용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산재예방 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행정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서 파악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활용·분석·개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 의무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감독관이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산업안전보건 행정 전산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등

제1절 사업장 감독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지방관서장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2. “예방감독”은 지방관서장으로부터 정기감독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주의 신청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받아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감독을 말한다.
3.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4. “특별감독”은 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10조(사업장 감독대상)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제26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3.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의한 화학적 인자 및 분진에 한한다)가 2회 이상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 분진(광업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와 직업병 유소견자(최초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표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이 1.0(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5, 10,000명 이상 사업장은 2.0으로 한다) 이상인 사업장.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표> 직업병 또는 유소견자 가중치 및 계산식

유해인자별	가중치		계산식
	직업병자	유소견자	
화학적 인자	1	0.5	Σ(유해인자별 직업병자수 또는 유소견자수* 가중치)
분진	0.5	0.25	

주의 1. 유해인자별 직업병자 또는 유소견자의 수는 최초 발생 또는 발견자만 적용
 2. 당해 연도에 동일 근로자가 직업병자 및 유소견자 판정을 모두 받은 때에는 직업병자로만 계산
 3.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이환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직업병자 또는 유소견자는 제외 가능

5.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등급(M±)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다만, 같은 기간 동안에 M-등급에서 M+등급으로 등급이 높아진 사업장과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동일 사유로 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6.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다만, 이 조에 따른 감독 시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7.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 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 경우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본다(이하 같다).
8.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으로 발표한 재해통계를
사용하되, 전년도 재해통계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재
해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사업장

9.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부상(3일이상의 휴업재해에 한정한다)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 안전·보건관리 실태불량 사업장, 재해다발 업종에 해당하는 사
업장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감독실
시를 지시하거나 업무추진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장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지방관서장이 감독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가. 최근 1년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감전, 폭발·파열, 화재, 깔림·뒤집힘, 화학물질
누출·접촉, 산소결핍 등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로 안전·보건
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건이
2회 이상인 사업장

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라.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감독 실시가 필요한 사업장

② 예방감독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 중 업무추진지침
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방관서에 예방감독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기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등 산업재해 통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지침에서 정하는 기인물, 유해·위험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한 사업장

④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1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 지방관서장은 정기·기획감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예방지도과가 있는 지방관서장은 감독결과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것
2.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을 각 조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

② 지방관서장은 예방감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범위 등) ① 사업장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법령 관련 사항 전 분야를 대상(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감독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령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예방감독,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기획감독에 대해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 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감

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임검지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감독에 대해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수 등을 정하여 사업장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이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예방감독의 절차) ① 예방감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예방감독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예방감독 대상 사업장에 신청방법, 감독절차 등을 사전 안내
2. 지방관서에서는 신청사업장을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3. 공단은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사항 이행결과 보고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4. 감독관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개선 여부 최종 확인 후 개선 완료된 사항은 종결하고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제16조에 따라 조치

제13조(감독의 준비) ①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이하 “불시감독”이라 한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하거나 군사보안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독 실시 10일 이전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대상사업장이 시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계획 수립 후 해당 사업장에 감독대상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미리 파악하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참·착용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의 실시) ①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사업주에게 방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감독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감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덧붙여 임검지령서 등을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임검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감독실시)를 준용한다.
- ④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에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감독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사법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⑧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 및 제4항에 따라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 근로자

대표 등이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후 노사관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점검표 또는 확인서, 안전보건 개선사항 이행결과 보고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6조에 따른 감독결과 조치를 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감독 종료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
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
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인지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는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감독관은 시정기한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 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감독결과 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지시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제18조(사업장 점검대상)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장관이 제1절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지침 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관서로 시달한 사업장
3. 국장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형 사고 발생 사업장의 전국 단위의 계열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에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5.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제10조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장 조사대상) ①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티브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과약, 실태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장 점검·조사 등의 실시) 감독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조사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제16조 제1항 제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조사”로 본다.

제21조(사업장 점검·조사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제18조제1항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지시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되, 별도의 지침으로 조치 기준을 정할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제19조제2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정기감독 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19조제3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장 점검·조사업무의 위탁) 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기관, 비영리법인 등 재해예방기관에게 제18조, 제19조의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조사 및 조치 등

제23조(재해발생상황 파악)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
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
5.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확인 등

제24조(중대재해 발생보고)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등의 대형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개요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3명(사망자포함) 이상 사상한 경우
2.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이하 “화학사고”라 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한 재해 및 사고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신고 받은 지방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고 또는 상황 통보는 제25조제1항의 사건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감독관이 조사하여야 할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 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7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 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을 재해조사 착수일로 본다.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직무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의 조사대상 재해 중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 또는 공정 등에 대해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기계·설비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알려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대·일반)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사 대상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를 조사한 지방관서장은 조사결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재해발생 사실을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등)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해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9조(중대재해특별조사 등) ①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 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근로자들의 소요사태,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를 인가·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사건의 처리

제30조(신고사건의 처리) ①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와 처리)까지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고소·고발사건(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 또는 진폐법 제33조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1항)
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5항)
3.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34조제2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4제1항)
4.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4제1항)

5.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 제4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의2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8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51조 제6항 및 제7항)
6.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장관에게 등록한 자료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38조의4제1항)
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산안법 제49조의2 제1항 후단)
8.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안법 제52조의6, 제63조)
9.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진폐법 제16조제1항)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산안법 제34조의4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4.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제33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법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 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 기준정책관”은 “국장”으로 본다.

제6장 일반행정사무

제1절 법령질의의 처리

제37조(법령질의 처리 등)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 규정 제63조(법령질의 처리관할)부터 제66조(법령질의 처리기간)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인·허가 및 승인사무

제38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및 제72조(인·허가의 요령)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72조제3호 중 “별지 제43호 서식”을 이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본다.

제39조(인·허가기준) 제38조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인·허가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보건진단 등

제41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의 감독결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이 다수인 경우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을 받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와 사업장의 해제요청서(개선결과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진단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경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해당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 후 제출된 진단보고서에 급박한 위험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개선계획이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중지 등) ①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사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2.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 실시·불합격 기계·기구 등(산안법 제3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5조의4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은 사용중지 명령
3. 이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4.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되었거나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개선·철거·폐쇄

· 폐기 또는 원재료의 대체 · 제거 등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 · 제4호에 따른 시정,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안전 · 보건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포함)이 개선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정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업무

제45조(실적보고 등) ① 지방관서장은 제9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감독 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보건감독 등 실적보고서에 따라 매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
2.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4.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날

제5절 과태료 부과결정 등

제46조(과태료의 부과)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7조(부과결정)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영 별표 13)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제48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1998. 7. 2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제28조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시행일(1998. 8. 1)로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5. 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 ②(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산안법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 ③(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4)

이 규정은 2003.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별표 2 중 17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대장관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17호 조치기준에 따른 적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7. 3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5. 9)

-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호에 의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독은 이 훈령에 의한 정기·수시감독으로 본다.
-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점검 사업장의 조치) 이 훈령 시행 후 종전 훈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4항, 제4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2. 2. 8)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범죄인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다목의 “일반질병 유소견자(D₂)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의 즉시 범죄인지는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0.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지도감독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법률의 적용)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는 해당 법률(제11862호)의 시행(2015.1.1) 전까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690호)」 제40조”로 본다.

부 칙(2015. 6.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감독·점검·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제14조 관련)

1.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관련 서류 등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1. 법조항별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감독구분	범죄인지 대상
가. 산안법(법률 제11882호) 제26조제1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제5항·제8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34조의4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4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38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 제43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의2제1항 후단·제3항·제10항, 제51조제6항·제7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6, 제63조 및 진폐법(법률 제10304호) 제7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9조	정기·예방·기획·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나. 산안법 제42조제3항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다. 산안법 제43조제5항 및 진폐법 제21조제3항	“	직업병 유소견자(D ₁)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 ₂)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라. 산안법 제23조, 제24조,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예방·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2호에 의한 범죄인지 대상 조문 위반사항에 한함
마. 산안법 제29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예방·기획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바. 위 나목 내지 마목 기준에 따른 범죄인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반사항
		행정조치 후 불이행한 위반사항

2.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관련 위반 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7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작업장

-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제7조(채광 및 조명)
- 제8조(조도)

제3장 통로(해당없음)

제4장 보호구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제49조(조명의 유지)

제7장 비계(해당없음)

제8장 환기장치(해당없음)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휴게시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 제80조(의자의 비치)
-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해당없음)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132조(양중기)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제160조(운전방법의 주지)
-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적용 제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28조(재료)
-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7장 별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8장 제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20조(정의)
- 제421조(적용 제외)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52조(정의)
-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 제468조(기록의 보존)
- 제487조(유지·관리)
- 제488조(일반석면조사)
-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98조(정의)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12조(정의)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22조(정의)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58조(정의)
- 제559조(고열작업 등)
- 제565조(가습)
- 제566조(휴식 등)
-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제570조(세척시설 등)
-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73조(정의)
- 제579조(게시 등)
- 제589조(세척시설 등)
-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92조(정의)
- 제593조(적용 범위)
-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05조(정의)
- 제606조(적용 제외)
-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15조(세척시설 등)
-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정의)
-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646조(정의)
-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별표 3】

발부번호 : _____ 호

사 용 중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중지 대상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사 용 중 지	16×16(mm)	고딕체	빨강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6×6(mm)	"	검정
나 머 지	4×4(mm)	"	"
※ 이표지는 ~	4×4(mm)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mm)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mm)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별표 4】

발부번호 : _____ 호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대상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작업중지	16×16(mm)	고딕체	빨강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6×6(mm)	"	검정
나머지	4×4(mm)	"	"
※ 이표지는 ~	4×4(mm)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mm)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mm)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사무인계·인수서

20 . . . (전보·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를 인계·인수함

1. 사업장 및 행정대상 현황

가.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1-4명	5-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 집무규정상 사업장대장 등 각종 관리대장 별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대 상	설 치	미 설 치	비 고
	()		

※ ()안은 노사협의회로 갈음한 사업장수 기재

2. 사업장감독

가.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 상	실 시	미 실시	시정완료	시정중	비 고
계						
정 기 감 독						
수시·특별감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나. 시정중인 업체현황

(단위 : 개소)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시정지시 일자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구분 (사업명)	비고

3. 미결 현황

가. 민원사무

접수일자	신고인	피신고인	내용	조치사항	처리기한	사무구분

나. 재해조사(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피재자	재해정도	진행상황	비고

다.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진행상황	구분

라. 기능업무

업무명	현재까지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비고

4. 보존문서 및 관리대장

연번	보존문서 및 관리대장명	수량 (권)	보존기간	비 고

5. 기타사항

- 가. 업무편람
- 나. 관할지역 건설현장 현황
- 다. 기타(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등)

20

인계자 전임 근로감독관 직.성명 (인 또는 서명)
인수자 후임 근로감독관 직.성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 직.성명 (인 또는 서명)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 재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의 종류: 정기·기획·특별감독>

○ 사업장명 :

○ 소재지 :

○ 점검일자 20 . . .

○ 점검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확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된 경우만 해당)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노사 미참여 또는 날인거부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근로자수:)	전화번호	
생산품목			
현안 문제점 및 특이사항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의 기록	

3.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4.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5.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적정성 	

6. 근로자의 보건관리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작업환경측정 실시.누락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게시.비치, 경고표지, 교육 등 유해물질 관리의 적정성	

7. 안전상의 조치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 기계.기구 기타 설비 위험 예방 조치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 기타 안전상의 조치	

8. 보건상의 조치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허가 및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 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 기타 보건상의 조치(이상기압, 사무실 오염, 온.습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포함)	

9. 기타(2~8호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등>

- - ※ 감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 재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의 종류: 정기·기획·특별감독>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소 재 지 :

○ 점검일자 20 .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확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된 경우만 해당)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노사 미참여 또는 날인거부 사유

1. 건설현장 개요

현 황		(전화: -)				
건설업체명				현 장 명		
소 재 지				현 장 소 장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수				착 공 후 재해자 수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 주 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 책	성명	선임일자	자격	비 고
보건관리자						
협업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업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 이상)				도급사업 안전보건 점검(2월 1회 이상)		

2.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개 굴 안 착 작 식 굴 착 작 업 안 전 조 치		
터 굴 안 착 작 널 굴 착 작 업 안 전 조 치		
발 파 작 업 안 전 조 치		
거푸집 및 거푸집 안 동 바 리 집 전 조 치		
기타 붕괴예방 조 치		

3.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추락 재해 예방 조치		
낙하 재해 예방 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사전조사·줄파기 시공시 보호조치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 시 안전 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5.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감 전 재 해 예 방 조 치		

6.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 크레인, 콘도라, 둥근톱 등)		
가설기자재 인 증품('09.1.1 제품 검정품) 사용여부		
타워 크레인의 방호장치 성능 유지, 지지 방법 준수 등 성능 확인 및 작업 계획서, 추락 방지조치 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계 기구 위험예방 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7.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침수예방 조치		
기타 예방조치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8.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향타기 또는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공사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관리비	계상된 안전관리비	실행 안전관리비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p>○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 :</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일 자</th> <th>항 목</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목적외 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p>	일 자	항 목	금 액			
일 자	항 목	금 액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실시여부	○ ※ 기술지도 대상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0.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채용시, 정기, 특별 및 작업내용 변경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일반, 특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시 부착 / 교육 여부		

11.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귀마개, 방진마 스크, 방독마스 크, 보안경 등 건강보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12. 기타(2~11호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등>

- ※ 감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

【별지 제4호서식】

감독결과 보고서

담당	과장	(지)청장	결 재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중분류)	(근로자수: 명)	전화번호			
노동조합	(대표자:)	감독반	구분	소속(직책)	성명
			감독관		
감독일자	20 . . . ~ 20 . . . (일간)		관계 전문가	공단(○○○장) 지도사, 교수	
<p>○ 감독내용 * 주요 감독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장의 특징적인 내용을 기재</p> <p>○ 종합의견 * 감독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기재</p> <p>○ 보고 지연사유 * 감독결과 보고가 감독 종료일로부터 3일(근무일)을 초과한 경우는 지연사유를 반드시 기재</p> <p>붙임 1. 감독점검표 1부 2. 확인서(지적사항)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 보고자 직책 성명: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시 정 지 시 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관련 법조항	시 정 지 시 내 용		시정기한
<p>..... ~ 까지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정지시하니, 이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고, 시정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시정 결과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 고용노동청 (○○지청) 장</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 명령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관련 법 조 항	명 령 내 용		조치기한
<p>※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1조제6항(시정 등 조치명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습니다.</p>			
<p> . . . ~ . . . 까지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니, 이 명령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 .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p> <p style="text-align: center;">○ ○ 지 방 고 용 노 동 청 (○ ○ 지 청) 장</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p><u>확인결과 보고서</u></p>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 재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명(여 명)	
소재지								
감독 일시		행정조치 일자		조치 기한		수보 일자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사항					확 인 결 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20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청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하청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년 월	<input type="checkbox"/> 사망(명) <input type="checkbox"/>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정지시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부분·전면작업중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사고경위
- 조치 및 전망
- 조사반 편성방법
- 기타 중요한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20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 청 (공동도급)	(대표 :)	공 금 사 액 (백만원)	기 지 관	술 도 계	- 지도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미계약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하 청	(대표 :)	공 기 사 간			
현장명	(소재지 :)		근 차 로 수 (명)	방 계 획 서 관 계	공 종	사 류
			공 정 율 (%)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공사종류는 형틀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토공사, 전기공사 등 재해발생 공사 종류를 기재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input type="checkbox"/> 사망(명) <input type="checkbox"/>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 정 조 치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부분 전면작업중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사고경위
- 조치 및 전망
- 조사반 편성방법
- 기타 중요한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0호서식】

(중대·일반)재해조사 복명서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1. 사업체 개요

사업장명 (현장명)		대 표 자 (현장소장)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공사금액)		전화번호	

2. 피해자 및 재해발생 개요

피 해 자		재해일시	
재해부위		요양기간	
기 인 물		발생형태	

3. 재 해 상 황

가. 재해경위

나. 재해원인(직·간접적인)

4. 조사자 의견

붙임 1.

2.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관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1호서식】

(중대·일반)재해조사 처리대장

연 번	접수 일자	사업장명 (산재성립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 자수)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결 재	
					발생 일자	재해 자명	재 해 내 용	범죄인지 또는 행정종결 일자	위반법 조 항	처리내용 (사법·행정조치 내용)	피의 자명	담당	과장

297mm×210mm
일반용지54g/m²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하도급)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소장)	
소재지		근로자수 (공사금액)	
업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사망·부상)

3. 재해발생 경위(6하원칙에 의해 개조식으로 작성)

4. 조사자 의견

5. 첨부(사진, 재해상황도 및 관련자료)

6. 조사자

조사일시	제출일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3호서식】

인·허가 등 대장

인허가 등 번호	인허가 등 일자	인허가 등 종류	관 련 법 조 문	사업장 ·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	근로자 · 직원수	인허가 등 명칭	인허가 등 조건 및 특이사항	결 재		
										담 당	과 (팀) 장	기관장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5호서식】

안전보건 감독 등 실적보고(반기 누계분)

1. 처리내용별

구 분	대상 업체	실시 업체	미실 시업 체	위반 업체	처 리 결 과														
					행 정 처 리										사 법 처 리				
					소계	경고 등	시 정	사용중지	작업중지		안전 진단	보건 진단	종합 진단	개선 계획	과태료		소계	구속	불구속
부분	전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금액	개소 (명)			
단 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건)	개소(건)	개소(건/대)	개소(건)	개소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금액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계						()	()	(/)	()		()	()	()	()			()	()	()
사 업 장 감 독	소 계					()	()	(/)	()		()	()	()	()			()	()	()
	1) 정기 감독					()	()	(/)	()		()	()	()	()			()	()	()
	2) 수시 감독					()	()	(/)	()		()	()	()	()			()	()	()
	3) 특별 감독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사 건 처 리	소 계					()	()	(/)	()		()	()	()	()			()	()	()
	1) 중대재해조사					()	()	(/)	()		()	()	()	()			()	()	()
	2) 일반재해조사					()	()	(/)	()		()	()	()	()			()	()	()
	3) 신고 사건					()	()	(/)	()		()	()	()	()			()	()	()
기타조사					()	()	(/)	()		()	()	()	()			()	()	()	
기타업무					()	()	(/)	()		()	()	()	()			()	()	()	
지정기관 점검 등					()	()	(/)	()		()	()	()	()			()	()	()	

- ※ 1. 하반기 보고시에는 상반기분 실적에 누계하여 기재
- 2. “사건처리”의 “대상업체”란에는 조사대상 재해만을 기재하고 “사법처리”란의 ()에는 법인을 포함한 사법처리(범죄인지보고)된 인원수를 기재
- 3. “사업장 감독” 중 “기타”란에는 정기·수시·특별감독 외에 감독과 성격이 유사한 차등관리, 대행사업장점검(대행기관점검이 목적) 등을 기재
- 4. “감독” 또는 “사건처리”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모두 기재
- 5. 1개 사업장 또는 1건의 재해조사에 대해 처리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복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위반업체수보다 행정·사법처리 업체수가 많을 수 있음)
- 6. “기타조사”란에는 건강진단, 작업환경 미 실시 조사 등의 사업의 처리결과를 기재
- 7. “기타업무”란에는 감독 및 사건처리, 기타조사를 제외한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등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사업의 처리결과를 기재
- 8. “지정기관 점검 등”란은 대행기관, 검진·측정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규칙 별표 20)의 점검 등과 처리결과(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시정지시, 기타 로 구분)를 기재

3. 구속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위반내용	구속일자	피구속자 직책·성명	비고 (사업구분)

※ 비고란에는 구속하게 된 인지경위(예: 중대재해조사, 감독등)를 기재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관서명	사업장명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결정		과태료 징수		감독관명	비 고 (사업구분)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		

※ 비고란에는 과태료부과경위(예: 감독, 재해조사 등)기재

5. 작업중지·사용중지 조치내역

관서명	조치구분	사업장명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조 치		해 제		비 고 (사업구분)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 ※ 1. 조 치 구 분: 전면작업중지, 부분작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 2. 조 치 내 용: 대상, 수량(예: 프레스기 ○대)등 기재
- 3. 해 제 내 용: 조치내용에 대한 해제여부(기계·기구별)기재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사업장 현황

○○(지)청

연 번	위 반 업 체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감점처분 대상업체(원청업체등)					비고
	위반 업체명 (현장명)	대 표 자	면허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재해 발생 일자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처분 일자	확정 일자	과태료 금액	업체명 (대표자)	면허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출자 비율	위반 건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지)청

연 번	업 체 명 (현장명)	대표자명	면허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위반내용	비 고 (사업 구분)
					부과일	확정일			

※ 위반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만원) 표시하되,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출자 비율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